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9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윤종균 · 문정복 · 장종태
서영석 · 이연희 · 김남준
임호선 · 박용갑 · 노종면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다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제외한다)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그 실제 사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로서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생략)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 가. (생략)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u>물류단지시설용 토 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 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 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 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u>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물류단지시설용 토 지(다목에 따른 자동차경 매장용 토지는 제외한다)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 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 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 되는 토지로서 그 실제 사 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u>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u>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u>
<신설>	

현행	개정안
다. (생략) 3. (생략) ②·③ (생략)	<u>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로서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u> 라. (현행 다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